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27 선고 2020가단5010117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고1. B

2. 한국토지주택공사

변론 종결2020. 3. 30.

판결 선고2020. 4. 27.

주 문

1. 피고 B은,

가. 원고에게 30,933,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0. 27.부터 2018. 11. 25.까지는 연 6%,
2018. 11. 26.부터 2020. 3. 4.까지는 연 7.9%, 2020. 3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
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2.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
공동하여 원고에게 31,855,000원에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까지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
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, 관리비 등
일체의 채권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항운서

별지